

[사 건 명] 행심 2019 - 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퇴학』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8.10.24. 청구인은 교실에서 피해학생과 장난을 걸다가 시비가 붙었고, 피해학생이 연필로 청구인의 무릎을 찌름.
- 나. 이에 청구인이 볼펜으로 피해학생의 등을 찍었고, 이어 라이터를 피해학생의 머리카락에 대고 점화하려고 하였으나 점화가 되지 않자 뒤에 있는 우산을 가져와 피해학생의 옆구리를 찌름.
- 다. 청구인은 분리수거 통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뜨려 유리조각을 챙겨 실습실로 이동하여 피해학생의 목을 찔러 피가 나게 함.
- 라. 2018.10.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5호 심리치료를 긴급 조치하여 분리 조치함.
- 마. 2018.11.14. 청구인에게 『퇴학』 처분 조치함.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의 학교폭력은 우발적, 감정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 항목의 점수가 지나치게 높으며,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들도 있음. 청구인은 진심으로 후회,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음에도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에서 3점씩 부과 받아 이 또한 점수가 가혹함.
-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두 명의 위원이 강제전학 처분 시 현재 학교에 재학할 수 없음에도 잘못된 의견으로 퇴학 처분에 영향을 주었음.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학칙위반으로 선도 조치를 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 역시 퇴학 처분을 원치 않음. 전학처분으로도 피해학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퇴학이 아니더라도 교육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음에도 퇴학 조치를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라. 청구인은 반성 및 전문기관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인의 탄원서를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주길 요청함.
- 마. 청구인은 1학기 말 장난삼아 피해학생에게 먹을 것 좀 사 달라며 여러 차례 언어먹었고 청구인도 피해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김밥을 나눠 먹었으며,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피해학생이 필통 사건으로 청구인을 오해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음.
- 바. 청구인이 학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일

부 무리가 있으며 폭력의 지속성에 ‘높음’ (3점)으로 판단한 것은 과함. 이 사건 일주일 전에 □□□ 학생이 피해학생의 필통과 그 내용물을 숨겼으나 피해학생이 청구인이 숨겼다고 욕을 하였고, 사건 당일엔 청구인이 다리를 뺐었다가 앞에 앉은 피해학생과 접촉이 있었고 이후 접촉을 안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짝인 □□□ 학생이 청구인이 하는 척하며 피해학생을 건드리자 피해학생이 오해를 하고 청구인의 무릎을 연필로 세게 찔러 이에 화가 난 청구인이 볼펜으로 피해학생의 등을 찔렀으며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교과서를 던지며 욕을 하였음.

사. 두 번이나 오해를 받은 청구인은 억울하고 화가 나서 수업시간이 끝난 후, 피해학생의 머리에 라이터를 가져다 댔으나 불은 켜지지 않았고, 옆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학생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피해학생은 계속 욕을 하며 자기가 착각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음.

아. 청구인은 겁을 주어서라도 사과를 받을 요량으로 쓰레기통 앞에 있던 음료수병을 깨뜨려 그 파편 조각을 들고 도보 약3~4분 거리의 실습실로 이동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청했으나 피해학생이 욕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임.

자. 이 모든 일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 벌어진 일이며, 청구인이 마음을 진정하기에는 짧은 시간으로 우발적이며 감정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고의성 ‘높음’ (3점)은 가혹한 결정임.

차. 청구인은 사건 직후 출석정지로 가정에 머물면서 후회와 반성의 날을 보냈고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전화를 하였으며, 자치위원회에서의 청구인의 태도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임.

파. 사건 직후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 정신과 전문의가 ‘현재 환아 자신의 폭력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하. 강제전학만으로도 피해학생을 충분히 보호조치 할 수 있으며, ○○학교를 퇴학당한 학생이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퇴학 처분은 취소되기를 원함.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해학생(○○○)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학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으며,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가위로 피해학생의 목을 긁는 행동을 하였음.
- 나. 사건 당일 날,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볼펜, 라이터, 우산 등으로 가해를 하였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유리병을 깨서 교실에서 실습실까지 약 5분가량 걸어가서 피해학생의 급소인 목을 가해하였기에 고의성이 적다고 볼 수 없음.
- 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동행귀가를 요청할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잠을 못 잤음.
- 라. 자치위원회 참석 시, 청구인의 무덤덤한 답변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 마.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청구인이 ▲▲▲▲▲를 벗어나 타시도로 전학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다시는 청구인을 만나서 불안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
- 바. 청구인의 사건 당일 행위 및 자치위원회에서의 무덤덤한 태도, 상담사의 상담내용을 보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한 이후에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피해학생과 청구인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퇴학’ 처분을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보충서면, 답변서, 입증방법,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일주일 전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목에 가위를 던 적이 있다. 이 사건 당일인 2018. 10. 24. 청구인은 교실에서 피해학생과 장난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피해학생이 연필로 청구인의 무릎을 세게 찔렀다. 그러자 청구인이 볼펜으로 피해학생의 등을 찍었고 이어서 피해학생의 머리카락에 라이터를 갖다 대고 점화하려고 하였으나 점화가 되지 않자 뒤에 있는 우산을 들고 와 피해학생의 옆구리를 찔렀다.

나. 그 후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욕을 한 후 반대편 실습실로 이동하자, 청구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분리수거 통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뜨려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3~4분 거리의 실습실로 이동하여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피해학생의 목을 찢러 피가 나게 했다. 청구인을 진단한 ♀♀♀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19. 1. 3.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질병분류번호가 □□□□(■□■□■□■□)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14.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5호의 심리치료, 같은 제9호 퇴학처분을 조치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위 조정위원회는 2018. 12. 24. 청구인의 재심을 기각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이 유리병을 깨뜨려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피해학생이 있는 실습실로 따라가 피해학생의 목을 찢른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이므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폭력심각성 매우높음(4점), 폭력지속성 높음(3점), 폭력고의성 높음(3점), 반성정도 낮음(3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총점 16점으로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 처분 조치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학생을 가해한 행위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은 자기중심적이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서 청구인의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청구인의 반성의 정도가 낮은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판정 점수는 16점으로 결정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는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 이전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거나 학칙위반으로 선도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전학조치로도 피해학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깨뜨려 흉기에 해당하는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피해학생이 있는 실습실로 따라가 피해학생의 목을 찌른 행위이므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사안의 위험성이 심각하다. 그러므로 퇴학처분으로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이 크기는 하나, 청구인이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 조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

라.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로 재량권의 일탈이 없고, 가해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남용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